

□ 제 2 주 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김 창 숙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강사, 언론학 박사)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언론중재위원회

2023년 11월 15일

김창숙

차례

- I. 들어가며
- II.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현황 및 언론보도 행태
- III.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둘러싼 이슈들
- IV.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성

들어가며

I 들어가며

1. 들어가며

-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처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음. 한편에서는 국민여론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앞세워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범죄 예방효과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음.

국민여론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지배적임.

“국민 79.8%가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

찬성이유

- ①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 (57.9%)
- ②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 (16.6%)
- ③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 (13.2%)

반대이유

- ① 피의자 근처에 사는 주변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19.1%)
- ② 피의자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15.2%)
- ③ 신상을 공개할 만한 '중대 범죄' 기준의 모호성 때문 (6.74%)

조사기관: 뉴스토마토, 조사대상: 362명

조사방법: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을 이용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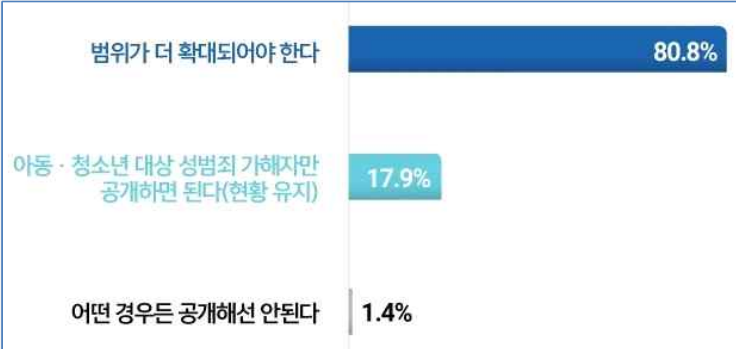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6.22~2023.6.23

출처: 뉴스토마토(2023.6.23). 국민 79.8%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 찬성"

I 들어가며

“96.3%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
 “95.5%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3.7.19 정책브리핑 중)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하는가?



적절한 신상공개 단계는?

- ① 최종 판결 이후 단계부터 공개 (36.2%)
- ② 수사 단계부터 공개 (35.0%)
- ③ 재판 단계부터 공개 (21.4%)
- ④ 모든 형량을 마친 이후 단계부터 공개 (4.7%)
- ⑤ 잘 모르겠다 (2.2%)
- ⑥ 절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 (0.5%)

조사기관: (주)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대상: 자체 패널 성인남녀 4,570명 (95% 신뢰수준, 허용오차 ±1.4%p)
 조사방법: 리얼리서치 앱을 이용한 모바일조사, 조사기간: 2023.6.17~2023.6.21
 출처: 인터뉴스(2023.7.3).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 여론 80% 넘어

I 들어가며

- 이와 같이 신상공개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2023년 10월 6일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음(대통령 재가 후 3개월 후 시행).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국민여론과 신상공개제도의 확대 움직임에 따라 최근 언론들도 신상공개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특히, SBS나 JTBC가 경찰 결정에 앞서 단독으로 피의자의 신상이나 실명을 공개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임. 이를 둘러싸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언론보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행태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현행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와 언론보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성을 모색해 보고자 함.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현황 및 언론보도 행태

II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현황 및 언론보도 행태

1. 국내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1.4
검토	3	16	15	12	6	-
공개	3	5	8	9	4	6
비공개	-	11	7	3	2	-

출처: (2018-2022년 통계) 김광현(2023).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현황·문제·보완 검토, NARS 현안분석 제285호, 국회입법조사처, p.10 (2023년 통계) 나무위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참조 (검토, 비공개 정보 없음)

공개 결정 사례 및 공개 이유

-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범행 다음날 공개)
 - ✓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 ✓ 피의자의 범행 시인,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
- 2021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검거 5일 만에 공개)
 - ✓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설명
 - ✓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25만 3000여명이 동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현황 및 언론보도 행태

- 2023년 정유정 살인사건 (검거 3일 만에 공개)
 - ✓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 출처: 여러 언론보도에서 발췌

- "인권침해 가능성"...살인 등 강력범죄자 신상 50%만 공개 (헤럴드경제, 2021.9.28)
- 2018년~2022년 8월까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49건(흉악범죄의 0.17%), 공개 결정 28건, 비공개 결정 21건 (일요신문, 2023.1.16)

비공개 결정 사례 및 이유

- 2021년 용인 조카 학대 사망사건의 범인 부부
 - ✓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그들의 친자녀와 피해자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
- 2022년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의 피의자 3인
 - ✓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
- 2023년 인천 택시 강도 살인 피의자 (16년 만에 붙잡힌 인천 택시 강도살인범)
 - ✓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

• 출처: 나무위키와 여러 언론보도에서 발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현황 및 언론보도 행태

2.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에 관한 언론보도 헤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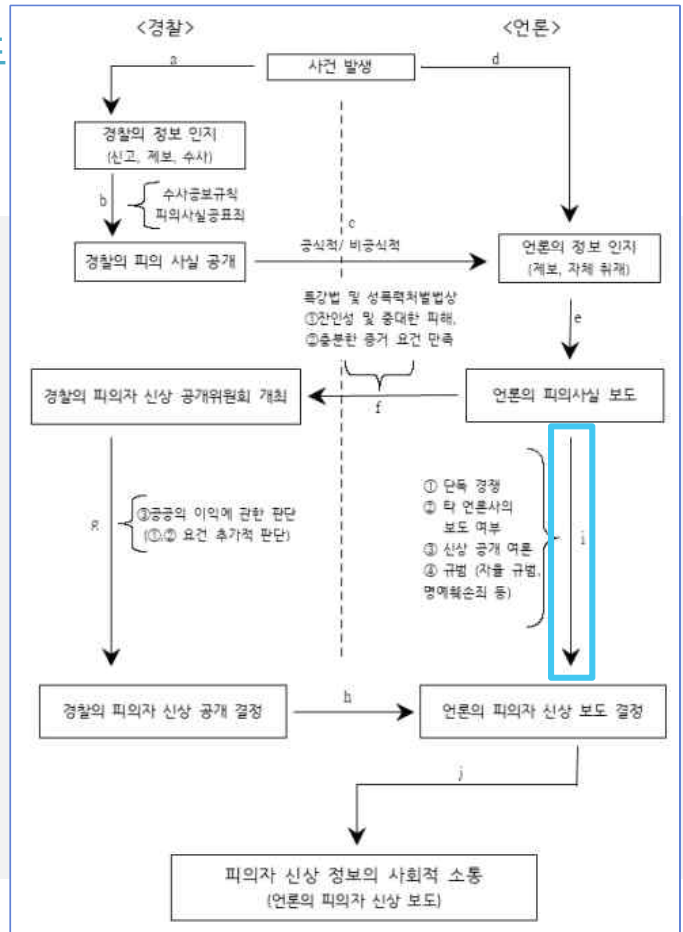
-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후, 언론보도의 헤드라인을 살펴봄. 결정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제외하면, 신상공개 여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함.
- 이 외에 여론과 인격권 간의 문제, 시민들의 의견을 다룬 헤드라인들이 많았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언론보도 헤드라인 사례

- 같은 강력범죄인데 신상공개 여부는 제각각... "기준 객관화해야" (MBN, 2023.6.2)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 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이투데이, 2023.6.12)
- 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 '코에 걸면 코걸이'... '체크리스트 있으나마나' (아시아경제, 2023. 6.16)
- 오락가락하는 범죄자 신상공개...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하고? (조선비즈, 2023.6.2)
- '36세 고유정' 신상은 공개됐지만 얼굴은 언제쯤? (국민일보, 2019.6.6)
- 여론은 원하는데, 인격권도 감안... 신상공개 딜레마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합뉴스TV, 2023.6.10)
- 정유정 신상공개 두고 "여자라서 빠르네" 충격 댓글들 (국민일보, 2023.6.2)
- "유튜버들 범죄자 공개 신중해야" "처벌 약하니 사적제재 필요" [입장 들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3.8.22)

3.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과정에서 법제도, 경찰, 언론의 상호작용성 연구 (송채은, 2022)

- 경찰 12명, 기자 5명 심층인터뷰



출처: 송채은(2022).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통되는가?: 법제도, 경찰, 언론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피의사실 및 피의자 신상 정보를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앞의 그림 설명))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며(a), 경찰은 수사공보규칙 및 피의사실공표죄 등을 고려하여 피의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b). 이때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는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경찰관 개인이 친분이 있는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c). 언론은 경찰 외 정보원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수하기도 하지만(d), 여전히 피의 사실 보도의 가장 큰 정보원은 경찰이다. 경찰을 비롯한 정보원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언론은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보도하는데(e),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 여부는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f). 경찰은 해당 사건이 특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을 때에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세 번째 요건인 ‘공공의 이익’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게 된다(g). 언론은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보도하는 모습을 보인다(h). 한편, 언론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i). 두 가지의 경로 모두,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은 최종적으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j)”

출처 : 송채은(2022). p.164

연구결과 (송채은, 2022)

-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행위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그 이후의 언론 보도, 그리고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음
 - ✓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 작용하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사공보규칙의 기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 현재 언론 대응 창구가 과장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자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 (언론과 경찰관의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찰관의 비공식적 정보 제공은 자제해야 함
-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피의 사실 공개를 자제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님. 경찰이 모든 정보를 감추려고만 한다면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남. 따라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피의 사실 공개와 관련된 훈령 및 법 제도 정비 필요
- 언론이 특정 사건을 보도하는 강도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 및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범죄 보도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
 - 언론보도 행태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 및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둘러싼 이슈들

1. 경찰보다 앞선 언론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경찰의 결정에 따른 경우와 달리, 언론이 경찰보다 앞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선공개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SBS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2019년 7월부터 텔레그램에서 개설·운영된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한 사건

- 2020년 3월 23일, [단독]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25살 조주빈
 - ✓ 신상공개에 대한 청와대 청원 230만명 넘게 참여
 - ✓ (서울지방경찰청) 2020년 3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공개 결정 :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번째 사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SBS 뉴스, 2020년 3월 23일)

SBS의 조주빈 신상정보 선공개에 대한 반응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경찰이 강력 대응의지를 밝히는데다 신상공개여부를 결론짓겠다고 한 상황에서 전날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보도 방향 역시 관대한 성범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보다 피의자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도 아쉽다.”고 응답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이 여론을 공론화하고 사회이슈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유사한 사건 발생시 언론사가 법적 기준을 넘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한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 “하루만 지나면 경찰의 발표가 나오는데 굳이 일찍 보도한 것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응답

변호사(익명)

“언론사가 정부의 부속기관도 아니고, 통제 대상도 아니다”, “언론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경찰에서 발표하기 전 언론이 미리 신상공개를 한 것으로 비난하긴 어렵다”. 다만, “언론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했을 때 과도한 경쟁이나 2차 피해 등 초래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어디까지 자율적 판단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출처: 한국일보(2020.3.24). <법 위에 국민감정? 경찰 결정 앞선 피의자 신상공개 두고 논란> 중 인터뷰 내용 발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언론보도를 둘러싼 논의들

JTBC

서현역 칼부림 사건



영상출처: 유튜브

2023년 8월 3일 17시 55분경, 최원종(22)이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앞에서 차량을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후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2명 사망, 12명 부상)

- 8월 4일 유튜브에 영상 게재 : [제목] '서현역 흉기 난동범은 '01년생 최원종'...범행 전날도 흉기 들고 갔었다 / JTBC 뉴스룸'
 - ✓ (경기남부경찰청) 2023년 8월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결정



“ 아직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저희 뉴스룸은 국민의 알 권리, 또 범죄예방 효과를 고려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튜브, 2023.8.4)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언론보도를 둘러싼 논의들

JTBC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사건



영상출처: JTBC 뉴스룸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최윤종(30)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너클을 끼고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8월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 성폭력 처벌법 제25조를 이유로 들며, 최윤종 실명 공개
- 8월 20일, JTBC 뉴스룸에서도 공개
 - ✓ (서울특별시경찰청) 2023년 8월 23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결정



“ 어제 오후 피해자가 끝내 숨지고, 최윤종이 밤사이 구속되는데다 강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 이름을 공개합니다. (JTBC 뉴스룸, 2023.8.20)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언론보도를 둘러싼 논의들

JTBC의 최원종, 최윤종 신상정보 선공개에 대한 반응

- JTBC의 선공개에 대한 논평이 많진 않았음. 다른 언론사들은 대부분 JTBC가 선공개했다는 사실과 이유를 단순 보도하였음. 블로그에서는 선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이 많은 편이었음.
- ‘미디어오늘’에서는 <언론의 피의자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반응 전달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신상공개를 했을 때 ‘범죄자 얼굴 좀 보자’는 국민의 분노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지만, 언론이 이에 편승하는 점도 있다. 자극적인 보도는 상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일시적 분노를 충족하는 데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있다는 증거는 없다.”
- “한국에선 ‘범죄자가 누구인가는 알 권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리가 확고하게 형성돼 있다... 유영철 사건 등 흉폭한 범죄가 사회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최근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수사기관의 홍보 욕구, 언론의 보도 욕구가 결합되는 상황이다.”
- “피해자는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주변인도 권리가 있다. 이들에 대한 인격권도 고려해야 한다.”

• 출처: 미디어오늘(2023.8.23), <언론의 피의자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중 인터뷰 내용 발췌

18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언론보도를 둘러싼 논의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전 SBS 본부장)

- “기본적으로 언론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위해) 합당한 취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피의자가 자백을 해도 실명을 쓰기 어렵다...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건 공적 활동의 영역이다. 국가 공권력이 발동된 사건은 절대로 사생활로 볼 수 없다.”
- “국민의 ‘알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본능”
- 1998년 대법원 판결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고 지적. “대법원 판례를 확장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름을 호명하는 것조차 위협시키고 있다. 피의자가 누구고, 어떤 수사를 받는지 논평을 해야 하는데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좌약시키고 있다”며 “결국 정보를 쥐고 있는 공권력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 출처: 미디어오늘(2023.8.23), <언론의 피의자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중 인터뷰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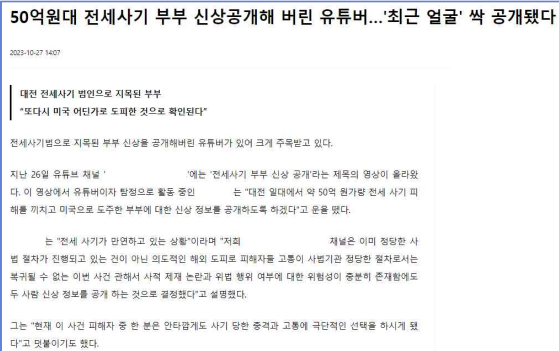
19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언론보도를 둘러싼 논의들

2. 유튜브 등에서 신상정보 공개한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

- 최근 유튜브를 통해 범죄 혐의자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적제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사법 절차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사적제재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런 가운데 유튜버 등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유튜버 이름과 유튜브 채널명까지 명시). 보도내용 중 유튜브가 공개한 신상 정보 일부를 언급하기도 함.



"여자의 친언니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로 이동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고급 티운 하우스에서 월세로 계약해 거주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자녀를 전직 국가대표 출신 펜싱 교사에게 가르침 받게 했다." - A 신문사(2023.10.27)



"(유튜버는) A씨 얼굴과 이름, 연락처, 사는 곳, 직업, 과거 이력 등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A씨는 1979년생으로 현재 한 영등포 폭력 조직원이다."

- B 신문사(2023.11.3)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언론보도를 둘러싼 논의들

3. 범죄자 정보 공개와 인격권의 문제

- 언론의 신상털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언론시민단체의 지적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시정권고에도 이와 같은 보도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미디어오늘, 2021.10.23)
- 또한, 범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일반화나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사건과 관련없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



- 2023년 6월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중, 정유정이 자폐성 장애로 분류되는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방영하자 부모연대가 '장애는 개인의 반사회적 범죄를 규명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함.
- 7월 3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사과

출처: 이디고(2023.7.4)

IV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언론 보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성

IV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성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언론보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성 모색

-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와 인격권의 문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견이 첨예한 부분임. 따라서 여기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고, 보다 나은 언론보도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확보

- 공개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임.
 -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근거', '공공의 이익' 등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
 -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이나 여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형평성 문제 제기)
- * 댓글 수와 신상정보공개 결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박서하외(2022),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여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 언론사의 관련 규정 정비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교화해가는 노력 필요
 - 언론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회 각계 주체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 마련

IV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선정성 문제 제기

-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건일수록 보도량이 많고, 언론사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보도가 선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
 - 지나치게 자세한 범행방법이나 현장 묘사, 가해자·가족·지인·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 유튜브 등이 공개한 정보 옮기기, 사건과 관련성 없는 신변잡기 보도 등
 - 경찰보다 앞서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당위성이 부족해서 선정성·상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음.



- 여론에 편승하거나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을 부각하는 보도를 지양하고,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 해결방법까지 폭넓은 내용을 전달해야 함.
- 언론이 반드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의 결정에 따를 필요는 없으나, 당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이나 수용자 확보를 위한 선공개는 지양해야 함.
- 언론을 통해 '범죄 학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행 묘사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4

IV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간의 바람직한 관계성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격권의 균형성 지향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력범죄의 경우, 여론에 편승하다 보면 범죄자의 인격권 침해 소지가 높아질 수 있음.
 - 특히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높음. 또한, 범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사람, 심지어 피해자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음(2차 피해 가능성).
 - 국민의 여론이나 알권리가 모든 정보 공개에 당위성을 제공해주진 못함. (인격권 침해, 무죄추정원칙 등 위반 가능)



- 언론은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한 인격권 침해 소지가 없는 지 면밀하게 검토해야함.
 -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와 호기심을 구분하고, 여론에 편승되기보다 적절한 보도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져야 함. (과잉취재, 과잉보도 지양)
-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법적·제도적 보완 및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음. 하지만, 법적·제도적 강화는 언론 자유의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여부를 떠나 언론의 성찰적 보도 행태를 다시한번 제안하고자 함.

25



감사합니다